



GLOBAL METHODIST CHURCH

창립 총회 커뮤니티: 조직 계획 및 함께 하는 삶을 위한 언약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개정일: 2025년 2월 17일)

머리말

히브리서 12장 15절 등의 성경 말씀에 따라 존 웨슬리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격려했으며, 1744년 처음으로 동생 찰스 및 몇몇 다른 성직자들과 만나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701). 그 전통의 영적 계승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모두의 공의를 위해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회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행 15:28)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열망합니다(롬 12:2). 따라서 총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조직 계획

I. 오프닝 세션

글로벌 감리교회는 총회특별위원회가 추천하고 연대협의회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며, 예배 시간을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TLC가 지정한 감독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의원 및 대의원의 인정. 공식 명단 발표는 등록 절차를 통해 완료됩니다.
- 총회의 투표 규정을 설정합니다.
- 총회 (준비) 위원회 보고서.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직 및 규약 계획 채택. 계획 및 규약은 회의석 상에서 채택되기 전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연대협의회에서 지명한 총회 비서의 선출, 해당 비서가 연대협의회에 의해 임명된 경우 (¶ 704.2, 제4안). 그렇지 않으면, 총회 폐회 시직을 수반하는 비서의 선거는 모든 세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F.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채택.
- G. 기타 비즈니스.

II. 의장

총회의 모든 본회의는 의제위원회(P 704.1)가 지정한 대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현역 및 명예 감독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입법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감독 중 한 명이 소집하며, 이 감독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아래 참조).

III. 총회 (준비) 위원회

총회의 위원회는 준비를 감독하고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추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대협의회에 총대 의원 수를 추천하고, 전 세계 교회에 대한 대의원 수의 공평한 할당 공식을 추천하며, 성공적인 총회 운영을 위한 물류 준비를 조율할 것입니다. 연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사이에 이 조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총회 개회 세션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의 사무총장

총회는 연대협의회에서 지명한 총회 비서를 선출할 것입니다. 새 비서의 임기는 총회 폐회 후 시작되며, 이전 비서가 전환 기간 동안 총회 폐회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서는 총회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사회 감독과 연대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합니다. 비서는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매일의 안건을 실행하고 청원 및 결의안을 처리하는 입법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총회 위원회와 협력하여 총회 운영과 고려할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대의원이 총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또한, 비서는 아래와 같이 직권상 겸직위원으로서 총회 행정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 직책은 유급 직원 직책일 수 있습니다. 총회 회기 사이에 비서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연대 협의회는 다음 총회까지 활동할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V. 일정

총회에서 소집된 현장 입법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변경으로 인해 일정이 코스타리카에서 구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의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교회 수와 정규직/정규직과 동등한 목회자 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대의원은 2026년 4월 1일까지 선출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청원은 2025년 1월 5일부터 접수됩니다. 청원 제출 마감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VI. 총회의 위원회들

A. 행정 관리 위원회

1. **의제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목회자 절반과 평신도 절반으로 구성된 8명의 대의원과 각 입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직권 겸직 위원 이 될 총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됩니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입법 위원회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청원 심사를 포함하여 본회의의 일일 순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 본회의의 의

장도 선정합니다.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나의 우선순위 안건을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한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청원 의제들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본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음 회의에서 다음 잠정 의제를 발표합니다.

2. **자격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목회자 절반과 평신도 절반으로 구성된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자격 승인과 대의원 좌석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3. **위탁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절반씩 총 8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접수된 모든 청원과 결의안을 해당 입법 위원회에 위탁합니다.
4. **의전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성직자 절반과 평신도 절반으로 구성된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들이 본회의에 제출한 표창, 의전, 감사 결의안과 총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된 특별 인사들을 심사할 것입니다.
5. **공보 위원회**는 3명의 대의원과 총회 비서로 구성되며, 매일 회의 진행을 승인하고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청원서를 장정 내 다른 조항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6. **공천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성직자 절반과 평신도 절반으로 구성된 8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양한 총회 위원회 및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인물을 추천할 것입니다.

B. 행정 위원회 멤버십

행정 위원회 위원은 총회 개최 최소 209일 전까지 각 대표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후보자 풀에서 연대 협의회가 선출하며, 교회가 속한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행정 위원회회의 선출은 총회 이전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입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 입법 위원회

청원처리의 첫 단계로서 8개의 입법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출된 청원의 수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연대협 의회는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두 개의 입법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하나의 위원회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회 위원회는 각 총회에 설정된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입법 위원회의 최소 및 최대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협의회에서 임명된 청원 비서는 제출된 각 청원의 처리 상태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그 처리(수락됨, 거부됨, 지시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총회 안건에는 각 입법위원회에 나열된 안건 외에도 입법위원회가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 그룹 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입법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교리와 성체**
교리 진술서; 모든 100의 문단; ¶¶ 412-421
2. **사회적 증언**
사회적 증언 진술 및 결의안; 모든 300의 문단 (모든 진술은 본회의 60%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3. **지역 교회**
PP 401-411, 422-448, 450-456
4. **사역**
모든 500의 문단
5. **감리직**
모든 600의 문단
6. **총회**
모든 700의 문단; 연회 및 지역회의 경계
7.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P 349, 모든 200's, 800's 및 1000의 문단
8. **사법행정**
모든 900의 문단 및 사법 절차

D. 입법 위원회 멤버십

각 연회 대표단 내에서, 각 대의원은 어느 입법위원회에서 봉사할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총회 비서에게 총회 최소 12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입법 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총회의 선호, 최소 및 최대 위원 수 및 성별, 민족, 인종 및 지리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총회 과도 기획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입법 위원회는 평신도 55% 또는 성직자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할당은 총회 최소 9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 입법 위원회를 위한 절차

1. **회의 전 회의** — 입법 위원회는 총회 개최 최소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화상으로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의원 교육을 받습니다. 임원들의 선출 후, 그들은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고 입법 위원회의 작업을 조직하고 계획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임원** — 첫 회의는 현직 또는 명예 감독에 의해 주재됩니다. 이후 회의는 선출된 위원회 임원이 주재합니다. 각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비서, 필요한 경우 하위위원회의 임원 등을 선출합니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글로벌하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리더십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총회 위원회는 입법 위원회 임원이 선출된 후 그들이 정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제공합니다.
3. **회의 진행 규율 위원** — 가능한 한 각 입법 위원회에는 자원봉사 진행 규율 위원이 배치됩니다. 회의 진행 규율 위원들은 모든 위원회 회의, 총회 소집 전 모든 가상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의 공동 생활을 위한 언약' 및 의회 절차 이행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합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위원회 절차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초기 회의 소개** — 각 입법위원회 구성원은 총회 비서 사무소에 서면 100자 약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총회 120일 전). 이 서면 소개서에는 사진, 교회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 관심 분야, 경험 및 전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개서에는 입법 위원회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무총장실은 초기 회의 전에 모든 위원의 서면 소개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 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면 각 위원은

이름, 거주지, 평신도 또는 목회자 신분, 임시 연회 또는 지방회 소속을 밝히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5. **정족수** — 모든 입법 위원회 회의 및 안건에 대해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의 1/2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 호명이 이루어집니다. 출석 및 결석 기록은 각 회의가 시작될 때 위원장 또는 그 지정인이 위원회 기록을 위해 발표합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회의 날짜 설정** — 각 입법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와 시간은 회원들의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한 투표를 바탕으로 과도기 창립 총회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총회 과도 위원회는 대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과 필요한 기술(장비를 포함하여)로 중앙 장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회의 시간 및 날짜에 대한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의원이 입법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표단장은 대리 대의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안건** — 가상 미팅 알림에는 서면 안건과 함께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기타가 준비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이 게시되어 배포된 후에는, 비본질적인 안건(의장이 결정한 것 같은)은 해당 회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습니다.
8.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 — 의장이 동의안, 청원안 또는 수정안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청원안,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토론 없이 진행됩니다. 토론 계속 동의는 해당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 전에 적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계속하려면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회원의 발의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동의안, 청원 또는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질문이 있는지 묻습니다).
9. **투표 공개 발표** — 비절차적 조치, 청원 또는 발의(또는 이에 대한 수정)에 대해 위원회가 실시한 투표 결과 및 총 투표 수는 투표 시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총회의 총무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10. **공개 위원회 회의** — 입법 위원회의 가상 회의는 기록되며, 기록은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11. **위원회 회의록**
 - a.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회의록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 및 해당되는 경우, 소수 보고서는 회의 결과를 다음 날의 일일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 6 PM까지 총회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회의록 외에도 가상 회의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본과 위원회 토론 중에 제공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서면 문서는 교단 웹사이트에서 계속 제공되며, 총회에서 작성되거나 사용된 모든 문서, 청원서, 동의안의 전자 버전은 역사적 가치와 입법 역사 가치를 위해 교단 웹사이트에 아카이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 b. 모든 버전은 역사적, 입법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교단 웹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보관됩니다.

III. 천거 및 선거

총회는 천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별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의 위원회 및 위원회에 소속될 멤버를 선출합니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 자격은 총회 대의원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천거 절차.** 연회 및/또는 대표단은 총회 전에 최소 180일 전에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 중 하나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은 총회 개최 최소 180일 이전에 위원회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천거위원회는 잠재적 개인 후보의 이름을 관련 연회 천거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사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최대 100자 이내의 간단한 약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약력은 게시된 후보자 명단에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인쇄됩니다.
- B. **대표성.** 천거 위원회는 위원회와 카운슬의 구성에 있어 지역, 인종/민족, 성별, 연령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위원들의 재능과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C. **공천 위원회 절차.** 공천 위원회는 총회 개최 최소 120일 전에 각 위원회 또는 협의회 후보자 명단을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D. **추가 후보.** 천거위원회 명단이 발표되면, 추가 인물들은 최소 총회 90일 전까지 추천될 수 있습니다. 100자 약력서 포함. 천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연회와 함께 이러한 추가 후보자를 심사할 것입니다. 천거 위원회 후보자 및 추가 후보자의 전체 목록은 회의 전날 제공되는 사전 회의 워크북에 게시됩니다. 이 후보자에는 연회 또는 대표단에서 추천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천거 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 E. **추가 회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추가 위원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F. **선출될 협의회 및 위원회.**
 - 1. 연대 협의회 (¶ 807.2)
 - 2. 전도, 선교 및 교회 개척 위원회 (¶ 808.1)
 - 3. 제자도, 교리 및 정의 사역 위원회 (¶ 809.1)
 - 4.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회 (¶ 810.1)
 - 5.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회 (¶ 811.1)
 - 6. 총회 위원회 (¶ 812.1)
 - 7.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 (¶ 813.1)
 - 8. 연회 위원회 (¶ 814.2)
 - 9. 글로벌 감독 위원회 (¶ 605.1)
 - 10. 연대 항소심 협의회(및 대체 위원회)(¶ 920)

VIII. 대의원 비용

미국 내 대의원의 모든 여행, 숙박 및 일당 비용은 각 연회에서 총당하도록 권장됩니다. 미국 외부에서 온 대의원의 비용은 일반 교회나 다른 연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총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창립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왕복 일반석 항공권을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총

회가 개최되는 국가 외의 회의에서 온 대의원에게는 총회 개최 예정일 전후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착 및 출발을 위한 추가 경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식비와 숙박비를 자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대의원이 동일한 자동차를 타고 총회 장소로 갈 경우, 소유자는 주차비, 통행료, 마일리지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IX. 대의원 조직

- A. 각 대표단은 대표단 또는 연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각 대표단 단장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B. 대표단장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 대체 대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앞두고 총회 기간 동안 각자의 책임에 대해 안내합니다.
 - 2.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등 총회와 대의원 간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3. 대의원들과 함께 "총회의 조직 계획"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언약"을 검토합니다.
 - 4. 총회에 상정될 입법 제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 5. 요청된 대로 대의원이 섬기고 싶어하는 입법 위원회를 제출해 주세요.
 - 6. 대표단과 연회가 총회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촉진합니다.
 - 7. 자격 증명 팀에서 개발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및 본회의에서 대체 대의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X. 청원 경찰, 페이지 및 회의 전문의원

- A. 총회 과도 위원회 또는 그 지명자는 행사 현장에서 마샬, 페이지, 법리 자문을 모집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B. 마샬과 페이지는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 C. 청원경찰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회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질서와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D. 그들은 또한 길 안내를 돕거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E. 페이지는 자료 배포, 투표 안내원 역할(필요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대의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 회의 전문 의원은 본회의와 입법위원회 세션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G. 이러한 회의 전문 의원은 총회 대의원이 아니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 H. 총회 예산에는 총회 참석 및 참여에 필요한 회의 전문 의원들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의 질서를 위한 언약

I. 매일의 일정

의제 위원회가 매일의 일정과 의제를 정하며, 모든 본회의와 입법 위원회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본회는 통역 서비스를 기준으로 저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3분의 2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II.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 및 예비 대의원은 선출된 순서에 따라 좌석에 앉게 되며,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단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예비 대의원은 교체가 이루어진 대의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비 대의원은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대의원의 자리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좌석에 앉도록 선택된 예비 대의원은 불참한 대의원과 같은 순서(평신도 또는 성직자)로 착석하도록 지정됩니다.

III. 의회 절차

- A. **목적.** 본 규약과 로버츠 회의 규칙의 목적은 총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약이나 로버츠의 규칙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능력을 차단하거나 소수의 관점을 침묵시키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본 규약에 포함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B. **합의.** 가능한 경우, 총회는 전체 교회의 일치를 구현하는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606에 따라 창립 총회는 로버츠 회의 규칙과 총회가 채택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C. **정족수.** 창립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하되, 정족수 확보를 위해 매일 매일 그보다 적은 수로 휴회 또는 정회를 할 수 있으며, 최종 회의에서는 회의록 승인하고, 출석부 기록을 명령하며, 산회 (¶ 705.2)를 할 수 있습니다.
- D. **동의 안건.** 입법 위원회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매일 시작되는 동의 안건으로 승인, 반대 또는 회부할 수 있으며, 대의원 10명의 동의를 있으면 동의 안건에서 해당 안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 **의제.** 의제 위원회는 매일 업무가 시작될 때 의제를 추천하고,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제를 채택합니다. 총회의 서기는 당일의 순서와 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의제를 관리하고 안내합니다. 의제로 상정된 안건은 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순서를 벗어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한 채택된 안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 F. **발표자.** 입법 위원회의 투표로 지지된 제안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지명자가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소수의견은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그러나 위원회 동의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됩니다(규약 III.14 참조).
- G. **말하기.** 발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먼저 사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질의를 하거나 의회 질의가 아닌 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지도된 대표자는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이름, 컨퍼런스 멤버십, 발언 이유를 나누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인지도된 대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1. 사회자는 발언자를 청할 때 회의장의 다양한 섹션과 전 세계 교회의 폭을 고려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 대의원들의 투표로 토론이 연장되지 않는 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찬성 3번, 반대 3번으로 제한되며 각 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어떤 대의원도 질문이나 잘못된 진술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 동일한 동의안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단, 청원 또는 소수 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은 표결 전에 최대 3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발언 횟수 제한과 발언 시간은 언제든지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H. **토론 종료.** 이전 질문을 논하자는 동의는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안에 대해 늘하던대로 최소 두 번의 찬성 및 두 번의 반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동의안이 채택되려면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회의 중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하는 것.**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하는 대의원은 사회자가 인지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을 먼저 인용하고 아마도 가능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요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의사 진행 규칙 문제는 자문이나 결정을 위해 본부에 제출하지 않는 한 토론 없이 사회자가 결정합니다. 사회자의 결정은 본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자와 항소인만 투표 전에 항소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각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J. **동의안.**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재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 (committee) 또는 위원회(commission)로 부터 오는 동의는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동의안과 수정안은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K. **선거.**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효 투표 수가 총 유효 투표 수의 필수 비율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유효한 선거로 간주됩니다. 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용지에 채워야 할 공석 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후보자에게는 한번 이상 투표할 수 없고, 또 이미 선출된 사람들에게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L. **투표.** 투표는 전자 투표 또는 거수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1. 대의원은 회의장 내에 있어야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거수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투표 전이나 직후에 모든 대의원은 모든 질문에 대한 거수 투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표는 기립 투표로 이루어지며 안내원들이 개표위원 역할을 합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한 비밀 투표 요청은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안내원들은 비밀 투표의 개표위원 역할을 합니다.
 3.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이 모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a. 한 비대의원이 의장의 초청 또는 3분의 1의 투표로 입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될 수 있습니다.
 - b. 투표가 동수일 경우 사회자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 c.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최초 채택 후 규칙을 채택, 일시 중단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 ii. 헌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 iii. 오늘의 특별 주문을 따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iv. 이전 질문에 대한 요청을 유지하려면.
- v. 채택된 안건 순서에서 벗어난 비즈니스 고려하기.
- vi. 원래 제한된 입법 의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해.
- vii. 본 규약에 명시된 시간 외에 세션을 유지하려면.

M.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안. 다음 동의안은 토론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1. 최종 회의 종결 이외에, 자격 요건이 안되는 휴회를 위해
2. 규칙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
3. 테이블에서 모션을 배치하거나 제거합니다.
4. 이전 질문을 순서대로 호출합니다.
5.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안을 다시 검토합니다.
6. 토론의 한계를 제한하거나 연장합니다.
7.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기 위해 잠시 멈추십시오.

N. 대안 및 소수 보고서.

1. 결의안이나 청원은 대안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대안이 단순히 본 안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이 있고 본 안건에 대한 대안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 위원회 소수의 대체 동의안은 입법 위원회 다수 의견과 동시에 제출되는 소수 의견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됩니다.
2. 입법위원회의 주 발의안 또는 다수 발의안이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동의안은 먼저 제안된 수정안을 고려한 후에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제안된 수정안을 논의한 후에 대안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 대신 대체 동의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3. 대체 동의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체 동이가 본 동의가 됩니다. 대체 동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원래의 본 동의안은 처리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4. 이전 질문에 대한 동의는 질문의 (찬반) 양쪽에서 최소 두 명의 발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의사진행을 위한 대체 동이가 될 수 없습니다.
5. 소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관련 청원에 대한 최종 위원회 조치 후 1시간(휴식 시간 제외) 이내에 입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신고서에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5명 또는 입법 위원회 구성원의 10%(둘 중 적은 수)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면 요청서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통지(III.N.4) 후, 대의원은 소수 의견 보고서의 실제 제안 문구와 100자 이내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보고서는 총회 마지막 날이 아닌 한, 통지한 후 다음 날의 인쇄 마감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날이 총회 마지막 날인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가능

한 한 빨리 제출하되 늦어도 통지 당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일
일 소식지와 별도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O. **재검토.** 본회의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안은 다수 의견에 투표한 대의원의 제안으로 언제든
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를 위해 제안된 동의안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재검토 동의안
도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P. **휴회.** 폐회 동의는 정식으로 인정된 대의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른 대의원이 발언권을 가진 경우, 질문이 계류 중이거나 투표를 진행 중인 경우, 이전 질문이 소환
되어 조치가 계류 중인 경우, 폐회 동의안이 부결되어 사업이나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회의
폐회 시간을 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계류 중인 경우, 폐회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Q. **미결의안.** 총회에 제출된 모든 유효한 청원은 입법위원회에서 처리(승인, 거부, 회부)해야 합니
다.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원은 본회의에서 처리(승인, 비승인, 회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에서의 예의

- A. 총회의 대의원과 게스트는 항상 친절, 열정, 애정어린 대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
든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경적 덕목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비대의원이 승인 없이 총회의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단체 또는 위원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다른 사
람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
위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총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B.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가상 전자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
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시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의의 사회자는 회의의 예의를 위반하
는 자를 즉시 회의실 또는 가상 회의에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는 한 현재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사회자가 개인을 제명한 결정은 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번
복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이러한 위반자의 퇴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대의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사회자는 언제든지 회의의 진
행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총회의 세션은 재적 대의원
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안
상의 이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세션은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되어야 합니다.
- D. 고려 중인 사안과 관련된 자료의 배포는 대의원의 개인 공간이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
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회의장 또는 입법 위원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사용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물품들을 폐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의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입법 자료가 방청석 안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배포가 허용
됩니다. 청원 비서 및 참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된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 자료의 배포
는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허용됩니다.

V. 계획 및 언약 수정

회의 초반에 조직 계획과 '함께 사는 질서를 위한 규약'을 채택할 때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후 개
정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채택 이후, 계획 및 규약은 총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 변경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 또는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의회 상황에서는 총회의 행동에
있어 현행판 로버트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